

## ◎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2-62호
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9월 2일

### 방송통신사무소장

#### 1. 근거법령
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, 제76조(과태료)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(과태료의 부과)
-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, 제14조(송달의 효력발생)

#### 2. 행정처분 대상 : 김\*성

#### 3. 게재(게시)기간 : 공고일로부터 15일간

#### 4. 이의제기기한 : 게재(게시)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

#### 5.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,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.

- 건명 : 영리목적이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
  - 수입근거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(과태료)
  - 산출근거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
- ※ 체납 시 과태료에 3% 가산금과,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.2% 증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.

(☎ 042-347-2102 / FAX 042-347-2108 / \ E-mail : [hsham0302@korea.kr](mailto:hsham0302@korea.kr))

#### 행정처분 대상자

구분	대상자	주민등록번호	고지주소	법령 위반사항	과태료 금액(원)	스팸URL 전화번호	광고 내용
1	김*성	690928-*****	세종시 장군면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, 제3항, 제4항, 제6항	3,750,000	010-****-2267	상품홍보